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가. 2005. 3. 3 : 사천시장제출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5호)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과장 강대평)

가. 제안이유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면내용을 반영 하는 한편, 시민이 이해하기 힘든 법령 제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2000. 12. 31일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형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는 2007년 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되 과세할 세액이 종전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

○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

2) 법령 제명 표기방법 개선

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자동차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2004년까지 자동차세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 등이 빈발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감면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